

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정진술, 양민규,  
권순선, 이영실, 김화숙,  
김경영, 이은주, 송아량,  
이병도, 김소양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주민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·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바,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감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.(안 제11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”을 “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、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인지방소득세를”을 “세액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이 조에서 “사회적협동조합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<u>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</u>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<u>법인지방소득세를</u> 추정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	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, 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</u> --. ----- ----- ----- <u>세액을</u>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·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세입 감소(비용 발생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70,556천원

- 예상되는 세입감소가 2년동안 70,556천원 연평균 35,278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액은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2018년도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함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70,556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 계
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
세입	주민세 재산분 감면	△927	△927	-	-	-	△1,854
	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(제11조 제2항)	△34,351	△34,351	-	-	-	△68,702
	소계(a)	△35,278	△35,278	-	-	-	△70,556
세출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총비용(b-a)		35,278	35,278	-	-	-	70,556

주 : 감면 기한은 본 조례안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추계함

- 2020년~2021년 연간 비용 감면액 = 35,278천원

$$= \text{주민세 재산분} + \text{주민세 종업원분}$$

$$= 927\text{천원} + 34,351\text{천원}$$

**【참고】 서울시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주민세 납부 현황(2018년 기준)**

(단위 : 개소, 천원)

연도	총 법인수	주민세 재산분		주민세 종업원분		합계	
		납부 법인수	납부세액	납부 법인수	납부세액	납부 법인수	납부세액
2018	352	5	1,854	2	68,702	7	70,556

자료 :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

**4. 작성자**

시의회사무처 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